

##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3年 11月 4日

總務委員會

###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10월 8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3년 10월 22일
- 다. 상정 일자 : 1993년 11월 3일 제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 의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유용현)

#### 가. 제안 이유

-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5항에 산림법 시행령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부(사용)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공유 임야의 대부 및 사용 허가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에의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림법상의 국유 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을 적용하며,
-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특별회계 조항인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공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 회계의 세입 세출에 이입하도록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 골자

- 공유 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도록 세분화하였으며,
-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준용 규정 (조례 제34, 35, 36조)을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 지시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내무부의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중 특별 회계 분야의 '94 특별 회계 운용 방향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하여 보면,
- 일반행정 수행 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로 통폐합,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통폐합, 별도 기금으로 관리가 가능한 기금 특별회계는 폐지시킨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관련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제.개정은 우리구의 고유 권한이고 상부의 준칙 시달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하나의 예시나 참고 사항으로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임.
-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폐지는 설치했을때와 비교하여 그 필요성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족의 충분한 설명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공유 임야의 대부료(사용료)를 현행 조례에서는 10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였으나 그 대부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으로 준용한다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00분의 1에서부터 100분의 5, 100분의 10을 적용)
- 이는 세입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에 두는 비중보다 구민의 자생력의 간접 지원 행정상의 적정한 규제등으로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적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조례 개정으로 대부료 인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물가인상 억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때 공유 임야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인상시킬 필요가 있는지 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산림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될 배경의 설명이 집행부측에 없음.

## 4. 질의,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양한석 위 원	재무과장 유용현	<input type="radio"/> 구청에서 공유 임야를 대부하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	<input type="radio"/> 시유나 구유 임야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음.
주만보 위 원	재무과장 유용현	<input type="radio"/> 조례는 1000분의 10이고 산림법에 의해서는 100분의 1, 100분의 5, 100분의 10 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바람.	<input type="radio"/> 각종 산림의 종류에 따라서 3단계로 세분화하자는 취지 임.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